
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
일부개정법률안
심 사 보 고 서

2025. 8.

국토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9월 13일, 김도읍의원 등 12인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9월 19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

제418회 국회(정기회)

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(2024. 11. 13.)

상정·제안설명·검토보고·대체토론·소위원회부

제427회 국회(임시회)

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(2025. 7. 15.)

상정·축조심사·의결(원안가결)

제1차 국토교통위원회(2025. 7. 21.)

상정·소위심사보고·찬반토론·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국회의원 김도읍의원)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신장애인,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, 최근 일부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의 알코올중독자 또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 행사 및 시설물 파손 등으로 입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.

특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에서도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인의 자살 및 고독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, 입주자에 대한 단지 내 복지서비스시설의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상담이 미흡한 실정임.

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5 신설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: 박재유)

가. 정신건강 전문요원 배치 근거 마련(안 제10조의5 신설)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10조의5(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시설 중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에는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※ 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	

개정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관¹⁾에 정신건강전문요원²⁾을 배치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열악한 주거환경은 개인에게 사회적 고립, 심리적 불안감 및 우울감

1) 「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」

제10조의3(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복지서비스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「사회복지사업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5. “사회복지관”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.

2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17조(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(이하 “정신건강전문요원”이라 한다)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, 정신건강간호사,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.

등을 가중시켜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,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비교하면 주거환경이 취약하고 이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가 일반 아파트의 거주자에 비해 취약한 정신건강 상태에 놓여있을 수 있음³⁾.

실제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영구임대주택·국민임대주택·50년공공임대주택에서 총 413건의 자살과 고독사가 발생하였으며, 특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주로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서 높은 비율로 자살과 고독사가 발생하였음.

[표 1] 장기공공임대주택 자살 및 고독사 발생 현황

(단위: 개소)

연 도	영구임대주택		국민임대주택		50년 공공임대주택		합계	
	자살	고독사	자살	고독사	자살	고독사	자살	고독사
2018	32	45	8	3	3	2	43	50
2019	45	38	9	2	2	1	56	41
2020	29	39	2	3	2	—	33	42
2021	27	28	10	2	3	1	40	31
2022	35	22	11	6	2	1	48	29
합 계	168	172	40	16	12	5	220	193

※자료: 「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」(국토연구원)

또한,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정신질환 등이 있는 자가 거주하는 것은

3) 한수정·전희정, 2018, “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와 일반아파트 거주자의 정신건강 차이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”, 「행정논총」 제56권 제2호

입주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다른 입주민에게 불안과 실제 피해를 발생시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, 입주민 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유로 정신질환자 등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이는 가해자의 주거권과 거주민의 안전권이 충돌⁴⁾하게 되는 사항임.

따라서 우울증 환자, 정신질환자, 알코올중독자 등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사회복지관에서 일상적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상담과 치료 등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,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이라고 생각됨.

국토교통부도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기초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주로 거주하지만, 입주자 특성에 맞는 심리치료, 돌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므로 고립·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주거서비스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내에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⁵⁾을 제출하였음.

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9월말 기준 LH가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은 총 159개이며, 1개소당 1명을 배치한다고 가정

4) 「가해자 주거권 vs. 거주민 안전권...공공임대주택 ‘강제퇴거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」 (한겨레, 2019. 10. 8.자 기사)
- 진주 방화·살인 사건 계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강제퇴거 담은 개정안 국회 계류
- “개정안 불명확, 사회적 소수자 배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있어”
- 인권위 “퇴거 조치는 최후수단으로 사용돼야”...국회의장에 의견표명

5) 아울러, 기추진 중인 장기공공임대주택 ‘주거복지사 배치 사업’과 연계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힘.

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연간 총 36억원(159명 × 1.9백만원 × 12개월)임.

한편,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 임대주택 단지 내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경우 추가 재정 소요는 향후 5년간 297억 4,300만원(연평균 59억 4,900만원)임.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및 운영 (안 제10조의5 신설)		1,949	3,811	5,813	7,963	10,207	29,743	5,949
	국비	974	1,905	2,906	3,982	5,104	14,872	2,974
	지방비	974	1,905	2,906	3,982	5,104	14,872	2,974

※자료: 「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」(국회예산정책처)

* 주: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현행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있는 사회복지관 내에 1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경우 추산한 소요비용으로 향후 신규로 설치되는 사회복지관이 추가 되고, 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필요인원 등이 조정될 경우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 음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권영진)

동 개정안은 원안의결하였음.

6. 찬반토론의 요지

없 음

7. 심사결과

원안가결

8. 법제사법위원회 체계·자구심사 내용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※ 심사보고서 붙임서류
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

법률 제 호
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5(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시설 중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에는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0조의5(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시설 중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에는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